

‘삼바 흔들기’에 사라진 것은 ‘9조 + 개미들의 꿈’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당국, 이르면 23일 최종판단
고의성 인정엔 검찰고발 등 징계
투자자들 손실에 집단소송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으로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는 물론 투자자와 감독당국도 큰 타격을 입게됐다.

이제는 삼성바이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증시나 회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고, 분식회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투자자 집단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일정은 이달 23일, 다음달 7일이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23일에 금융당국의 최종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 이미 회계신뢰도 추락

만약 금융위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주요 진행경과)

일시	내용
15년 말	3대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인정
16년 5~6월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 실시
16년 10월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실시
16년 12월	참여연대가 바이젠사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에 질의, 금감원이 문제 없다고 회신
17년 2월	언론 이슈화 및 일부 국회의원 요청으로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로직스 심사감리 실시여부 검토 언급(2월 16일)
17년 4월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감리 착수(4월 4일/감리범위 : 12~15년 재무제표)
	대표이사 포함 회사 및 회계법인 임직원 등 관계자 20여명 금감원 문답 진행
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에 대한 국내 회계 전문가(6명) 의견서 금감원 제출
	금감원 조치사전통보서 발송(5/1일, 회사접수 5/2일)

/자료=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며, 경영진에 대한 해임권이나 검찰고발도 가능하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후속조치 여파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문

제가 된 회계 처리를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변동과 함께 투자자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수밖에 없다.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회계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소드(이하 에

피스) 관련 회계처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게 된다.

에피소드를 관계사로 분류했던 근거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다음달 말까지 가능하다. 행사가 무산되면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 재점화는 물론 기업가치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감독당국, ‘기습 발표’로 후폭풍 자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특별 감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4월이다. 1년간의 특별 감리를 마치고 지난 1일 회사와 감사인에게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것과 관련한 조치사전통보서를 통보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통보사실을 공개하면서 발생했다. 분식회계라는 민감하고 확정되지 않는 혐의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주가는 폭락하고 공모도까지 겹쳐 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또 감리 결과 사전통지를 놓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도 불거졌다.

분식회계가 아니라 결론나면 금감원은 신뢰도나 위상 추락은 물론 추가 하락

에 대한 소송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분식회계라고 결론이 내려도 삼성바이오가 이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나

삼성바이오 주가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지난 2~4일 사흘간 48만8000원에서 35만9500원까지 급락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려 8조5000억원 가량이 날아갔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거지면서 상대가 누구든 집단소송은 예정된 수순이다.

분식회계가 아니라면 의혹을 확정된 사실처럼 발표한 금감원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분식회계라면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인 회계법인, 상장주관사와 함께 지난해 감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협회와 업무를 위탁한 금융위까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자 활성화 기대

한반도 봄바람

(下) 통일위한 발걸음 댄 南北

철도 연결·공단 가동에 수출물량 ↑
침체기 겪는 해운·조선 재기 기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 중인 4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를 지난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경의선 도로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27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각계에선 이번 협력으로 얻게될 남북 간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철도 연결과 북한 공단 가동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로 침체에 있던 국내 해운 및 조선업은 재기를 노리고 있고 국책 금융기관들은 개성공단 지점 설치 등 남북 경협을 본격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 리스크 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주식 시장 안정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원이 최근 발표한 ‘신(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남북 경협 30년 평가’에 따르면 남북 경협의 역사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7.7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 정부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 선언)’을 통해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고 천명했다. 이후 정부가 예술품 수입 등 남북 교역에 나섰고 이듬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경제인으로서 처음으로 방북하여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나 현재 금강산 관광의 모태가 된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을 맞이한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투자 활성화 기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이 같은 원인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 리스크’를 가장 큰 요소로 보고 있다. 때마다 북한 정권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등을 꺼리게 했다. 이는 분석이다. 주식시장 역시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남북 경협 등을 통해 긴장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남북 경협은 또한 남북 간 경제적 격차 완화를 불러온다. 독일 통일을 살릴 때 경협을 통해 사전에 남북한 주민 간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6조3730억원으로 남한 1639조655억원 대비 4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당장 통일을 주장하기엔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상당하여 오히려 정치적·경제적 합일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리스크에 따른 대북 제재 등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선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성과보다 남북 경협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獨 통일 선례로 南北 통일 이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은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룬 국가”라며 “우리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통일을 위한 발걸음이 과거 독일 통일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원이 과거 발표한 ‘독일 통일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에 따르면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은 7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독과 경제 교류에 참여하여 4만 5000여 건의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 단일 계약 규모만 12억 마르크(독일 통화)에 달하는 등 거대 프로젝트도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통일 직전인 1989년 동서독 간 상품 교역액은 지난 1970년 44억 마르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53억 마르크에 달했다. 통일 전 서독은 14년간 한 해 평균 6억 달러씩 동독에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동서독 통일로 독일은 현재 유럽 내 1위 내수시장으로 도약했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했으며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동독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며 “다만 통일 비용 등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서독으로의 부(富) 집중, 동독 인구 유출 지속, 독일 사회 통합 지연 등은 한계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北 저작물 계약 늘어... 南北 협의 필요

>> 1면 ‘남북교류 물꼬...’서 계속

통일부, 저작권료 반출 재개될 듯

문제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외국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법원은 북한 저작물 분쟁에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6년 월북한 이기영 작가의 소설 ‘두만강’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도서출판 풀빛은 1988년 작가의 장손 이상열 씨와 두만강의 독점출판 계약을 맺었다. 한편 도서출판 사계절은 일본에서 소설 원본을 복사해 출판했다. 풀빛과 이씨는 사계절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송했다. 당시 법원은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원작자의 사망으로 이씨가 저작권을 상속했다고 판단했다. 원작자의 저작권이 조선작가동맹 등 북한 내 기관에 양도됐다는 사계절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북 간 명확한 합의 없이 법적 분쟁이 이어진 가운데, 저작권 수요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늘어났다.

◆문화교류 활성화 대비해야

저작권 관련 남북 당국 간 합의와 기준은 2005년 마련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한 저작물 이용 시 북한 측 저작권자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받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료를 보내면 된다. 현재 통일부가 저작권료 반출 승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 계약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협력발전연구에 따르면, 2006년 어문과 사진, 음악과 영상 저작물을 통틀어 35건이던 계약이 2015년 9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된 저작물은 총 657개로, 어문 저작물(524개)과 영상 저작물(98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남북한 저작권 관

련 국내 분쟁은 대부분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 데 따른다. 분쟁 과정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관한 사실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북한 내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북한에서 무단으로 유통된 한국 출판물이나 영상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달 한국 가수들이 평양에서 ‘봄이 온다’ 공연을 하면서 저작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또한 향후 민간교류 활성화가 예고된 만큼, 반입이 허가된 출판물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저작권의 권리 제한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독일처럼 문화 협정 적극 맺어야

앞서 동·서독은 분단 시절인 1972년 12월 기본조약 서문에 “민족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고 각 분야별 교류 협력을 규정했다. 이후 1986년 5월 문화협정으로 출판물을 포함한 저작권의 상호 보호를 심화시켰다.

서독은 교류·협력을 문화 당사자끼리 하도록 하고 국가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 상호 보호와 교류로 ‘문화 통일’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다.

학계에선 남북이 각자의 저작권법에 우선해 효력을 갖는 특별협정 성격의 합의서 체결로 저작권을 상호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장 법제 통일은 어려우므로,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에서 상호주의적인 협정으로 차이를 좁혀가며 ‘저작권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발전연구에 참여한 한명섭 통일법률사무소 변호사(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는 “아직까지는 우리 측 저작권자가 북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제기를 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류와 저작권 보호 관련 협정 또는 합의서 체결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중 기자 jker@